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. 2. 6 선고 2019가단20613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환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종합

담당변호사 이승진

변론 종결 2020. 1. 16

판결 선고 2020. 2. 6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여등기소 2013.

7. 8. 접수 제 116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,5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
완제일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충청남도 부여군 C 임야 5,232㎡ 및 D 전 1,495㎡(이하 '이 사건 밭'이라 한다), E 대 1,497㎡(이하 '이 사건 대지'라 한다)에 관하여는 2011. 3. 17. 원·피고 각각 1/2지분씩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.

나. 이 사건 밭에 관하여는 2013. 7. 8.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피고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,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2013. 7. 8.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의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.

즉 쌍방 사이에 이 사건 밭은 원고가, 이 사건 대지는 피고가 각각 소유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졌다.

다. 이 사건 대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이 존재하고 있었는데, 위 건물은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1. 5. 20. 원·피고가 각 1/2지분씩 소유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, 2013. 7. 8. 같은 달 5.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의 지분이 피고에게로 이전되는 지분소유권 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가 경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갑 제3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주위적으로,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 협의를 할 당시 이 사건 대지와 밭에 대해서만 공유물분할을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대지는 피고가, 이 사건 밭은 원고가 단독 소유하기로

분할합의를 하였고, 위 대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는 분할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위 건물에 대해 공유물분할계약서가 임의로 작성되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되었는바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.

예 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취득가액의 1/2인 1,2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하여야 한다.

나.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살피건대, 을 제1호증, 갑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공유물분할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그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, 법무사가 원고의 인감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,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점, 피고가 2012. 3. 20. 원고에게 공유로 된 부동산들에 대해 분할합의를 요청하면서 그 분할안으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였던 점, 이러한 상황에서 2013. 7.경 공유물분할합의를 할 당시 에위 건물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리가 없어 보이는 점, 이 사건 건물을 공유로 놓아두는 경우 건물 부지는 피고의 소유가 되는데 반해 그 지상건물인 이 사건 건물은 공유관계로 유지되어 쌍방 사이에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것인 점, 원고는 이 사건 분할등기를 위임한지 10여일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로된 것을 보고 이에 항의하였다고 하는데, 이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나는 동안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8. 7.경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다.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살피건대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공유로 되어 있던 부동산들에 대해 공유물분할 약정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여기에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,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1/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거나 쌍방 사이에 이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정재

별지